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1

발의연월일: 2013. 9. 12.

발 의 자:제갈원영·강병수·박순남

김기홍·박승희·안영수 신현환·신동수 의원

(찬성자 1인)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제정 2012. 7. 19., 시행 2013. 1. 1.)에 의거,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사장: 인천광역시장)"가 2013. 1. 31. 설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와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바, 제7조의2를 삭제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조의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u><삭제></u>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				
<u>다.</u>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와 구성은 위				
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u>같다.</u>				
1. 제1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				
한 사항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				
한 사항 중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에서 호선하되, 분과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4조 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분과위			
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회에 보고하여여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3조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의2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진흥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u>인천광역시의 영</u> 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 3.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4.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 5.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u>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u>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 을 수 있다.

제4조(영상위원회 설립)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 제공 및 지원, 유관기관・단체 협조
-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문화 자산에 대한 영상·디지털 데이터 구축
- 3.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시의 영상·문화산업 콘텐츠의 개발
- 4. 영상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
-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6. 그 밖에 영상관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07><개정 2012-1-16>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1-07>
-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1-07>
-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9><개정 2012-1-16>
- 4.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9>
- 5. 문화지구관리를 위 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24>
-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5-11-07>[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개정 2011-10-24><개정 2011-10-24>

제3조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07><개정 2012-1-16>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시 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02-12-30><개정 2012-1-16>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정수와 구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 제1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과 계획에 관한사항
- 2. 제2분과위원회 :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 중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4조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0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함.

-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제갈원영 의원